

『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2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2월 23일

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송림아파트는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당해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금회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환경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□ 정비사업의 명칭 :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
□ 정비구역 및 면적

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계	택지	도로	
신설	구미 송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	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1번지 일원	12,080	10,774	1,306	

□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

- 주된 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- 계획세대수 : 253세대(709명) 기존보다 17세대(26명) 감소
- 건 폐 율 : 19.50%
- 용 적 율 : 246.53%

라. 참고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-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는 12,080m² 면적에 735명(270세대)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,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기존 건축물 7동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

-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방안마련과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온한 가운데 재개발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 의 건 서

□ 사 업 개 요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2. 위 치 : 구미시 송정동 41번지 일원
3. 정비구역 면적 : 12,080m²
4.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
 - 용도지역 : 제2종 일반주거지역
 - 주된 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 - 계획세대수 : 253세대(709명)
 - 건 폐 율 : 19.50%
 - 용 적 률 : 246.53%
5. 추진배경 :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신청

□ 주 요 내 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·사업 추진 시
- 정비계획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,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및 조치토록 촉구함